

3. 그레나다(Grenad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-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8% (4% / 4%)	8% (4% / 4%)	-
노령연금 수급요건	납부 및 인정기간 500주 이상 (납부기간 150주 이상 포함), 60세	납부 및 인정기간 500주 이상 (납부기간 150주 이상 포함), 60세	-
노령연금 지급률(40년)	58%	58%	-
일시금	납부 및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 평균 주당 소득의 5배	납부 및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 평균 주당 소득의 5배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9년(적립기금)
- 현행법 : 1983년(사회보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공적·민간부문 근로자(견습생, 시간제근로자, 계절근로자 포함), 자영자
 - 임의가입 가능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
 - 월 총 소득의 4%; 임의 가입자는 6.75%, 16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없음
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소득 없음

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소득 : EC\$5,000
- 의무가입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상병, 출산 급여의 재원도 됨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
 - 월 총 소득의 8%
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소득 없음
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소득 : EC\$5,000
 - 의무가입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상병, 출산 급여의 재원도 됨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- 16세부터 59세까지의 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4%
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하한 소득 없음
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상한소득 : EC\$5,000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상병, 출산 급여의 재원도 됨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150주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한 50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 또는 인정 기간을 가지고 있는 60세 도달자
 - 상병, 출산, 또는 일시 및 영구 산재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기간으로 인정
 -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수당(사회보험)
 - 50주 이상 500주 미만의 보험료 납부 또는 인정 기간을 가지고 있는 60세 도달자
 - 상병, 출산, 또는 일시 및 영구 산재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기간으로 인정
 - 해외 지급 가능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정상퇴직연령 미만이고 영구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었으며 최소 1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 - 등록된 의사가 장애정도를 평가함

- 해외지급 가능
- 장애수당(사회보험)
 - 정상퇴직연령 미만이고 영구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었으며 최소 50주 이상 150주 미만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
 -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수당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이었거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지급
 - 수급 가능 유족 : 사망자와 최소 3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(사실혼 포함); 16세 (폴타임 학생은 21세)미만의 자녀; 피부양 부모
 - 유족배우자 연금은 재혼 또는 동거시 중지됨
 - 해외지급 가능
- 장제수당(사회보험) :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16세(폴타임 학생은 21세) 미만의 자녀 사망 시 장례비를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 주당 평균 소득의 30%에 500주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50주마다 평균 주당 소득 1%씩 가산
 - 평균 주당 소득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5년간의 소득을 52로 나누어 산정
 - 주당 최저연금액 : EC\$46.40
 - 주당 최대연금액 : EC\$657.70
 - 급여주기 : 월 지급
 - 급여조정 : 급여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됨
- 노령수당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의 평균 주당 소득 5배의 일시금
 - 평균 주당 소득은 관련기간 주당 소득 합계를 주당 수로 나누어 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주당 평균 주당 소득의 30%에 500주를 초과하는 납부기간 50주마다 1%씩 가산
 - 평균 주당 소득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5년간의 소득을 52로 나누어 산정
 - 주당 최저연금액 : EC\$46.40
 - 주당 최대연금액 : 주당 평균 소득의 60%

- 급여주기 : 월 지급
- 급여조정 : 급여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됨
- 장애수당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의 평균 주당 소득 5배의 일시금
 - 평균 주당 소득은 관련기간 주당 소득 합계를 주당 수로 나누어 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75%를 50세 이상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
 - 50세 미만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1년동안 지급됨(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을 때까지 지급)
 - 주당 최저연금액 : EC\$46.40
 - 주당 최대연금액 : EC\$493.28
 - 유족배우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을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연금 총액은 노령 또는 장애연금 100%에 유족연금 50%를 합산한 금액임
 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5%를 수급 자격 있는 자녀에게 지급; 장애를 가진 자녀나 완전고아에게는 50% 지급
 - 주당 최저 고아연금액 : EC\$19.70
 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5%를 피부양 부모에 지급
- ※ 합산된 최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 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급여는 월 지급되며 급여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됨
- 유족수당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의 평균 주당소득 5배의 일시금으로 지급
 - 평균 주당 소득은 관련기간 주당 소득 합계를 주당 수로 나누어 산정
- 장제비 : 가입자 장례 EC\$2,320, 가입자의 배우자 EC\$1,740, 가입자의 자녀 장례에는 EC\$870 지급

○ 보건사회보장부(Ministry of Health & Social security)

- <http://health.gov.gd>
- 전반적인 감독

○ 국민보험공단(National Insurance Scheme)

- <http://www.nisgrenada.org>
- 보험료 징수 및 사회보험제도 운영

<2019년 ISSA 자료>